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民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8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담의 범위(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규정 (안 제4조)
- 나. 상담대상자(구민, 기업인, 직장인 등) 규정 (안 제5조)
- 다. 상담방법(직접방문, 서면, 온라인 등) 규정 (안 제6조)
- 라. 법률상담관(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규정 (안 제7조)
- 마.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지급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5,800천원 (2017년 본예산 편성예정)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무료법률 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자치사무’로 보이며, 기타 상위법령 위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함.
-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4%인 21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도봉,마포,금천,영등포 미제정)
- 또한, 무료 법률상담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할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적법함. (2007.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따라서, 무료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제정안의 조문체계는 본문 1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상담실 설치, 상담실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안 제7조는 상담의 범위를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기업 활동, 부동산, 세무 분야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상담관도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위촉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상담대상자를 영등포구민, 기업인, 직장인 등으로 하되,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상담 우선권을 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 계층을 배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상담 기록부 또는 전산파일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였는바, 법률상담의 특성상 개인의 신상을 비롯한 각종 민감한 정보들이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안에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안 제11조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2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